

2014학년도 제4차
<제314차 이사회 회의록>

2014. 8. 14.

학교법인 대우학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2014학년도 제4차

<제314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1 인	2 인
재적임원	11 인	2 인
참석임원	11 인	2 인

1. 일 시 : 2014. 8. 14(목). 07:30 - 10:15 (회의소집 통보일 : 2014년 8월 6일)

2. 장 소 : 포스코센터 라운지룸 (포스코 B/D 서관 19층)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윤성복, 안재환, 문길주, 신희택, 주인욱,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최 홍, 김선용 (11인)
- 감사 : 문휘창, 배홍기 (2인)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 유희석, 교무처장 박영동, 기획처장 김민구,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예산팀장 조경숙, 의료원기획팀장 김의섭 (6인)
- 아주자동차대학 : 총장 신성호, 기획처장 류지호 (2인)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심지훈 (2인)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한 분 중 열한 분 전원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6. 보고사항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아주대학교 및 아주자동차대학의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김민구 기획처장, 신성호 아주자동차대학 총장이 각각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 심의안건

상임이사 이영현 : 제314차 이사회 심의 안건은 학법대우 제14-193호(2014.8.6)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제1호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 제2호 아주자동차대학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승인(안), 제3호 2015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승인(안), 제4호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제5호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제6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제7호 아주대학교의료원 병원동 증축 승인(안), 제8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승진 임용 동의(안), 제9호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승인(안), 제10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제11호 아주대학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제12호 원천정보관(가칭 카페테리아) 신축 관련 변경 승인(안), 제13호 아주대학교 내 본교-장례식장 연결도로 개설 승인(안), 제14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제15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제16호 2014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등 16개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8. 심의내용

제 1 호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대학 선정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직제에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단」, 「NCS(국가직무능력표준)지원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단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으로 맞춤형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특성화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운영 및 평가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 자료의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박 상 일 : 교육부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대학 선정에 따라 필요한 규정 개정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기 구) ① 본 대학에는 총장, 교학처, 산학처, 기획처, 행정처를 둔다. ② 부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그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교학처장 : 교수학습지원센터, 생활관, 창업교육센터, 학생서비스센터, 언론미디어센터, <신설> 2. 산학처장 : 산업기술연구소, 취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3. 기획처장 : 국제교류센터 ③ 부설기관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학술정보센터 2. 산학협력단 3.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단 <신설>	제2조(기 구) ① 본 대학에는 총장, 교학처, 산학처, 기획처, 행정처를 둔다. ② 부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그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교학처장 : 교수학습지원센터, 생활관, 창업교육센터, 학생서비스센터, 언론미디어센터, <u>NCS (국가직무능력표준)지원센터</u> 2. 산학처장 : 산업기술연구소, 취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3. 기획처장 : 국제교류센터 ③ 부설기관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학술정보센터 2. 산학협력단 3.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단 4. <u>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단</u>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석

이사

안

재현

이사

이

영현

제 2 호 아주자동차대학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의거하여 아주자동차대학은 교육부의 평가인증 위탁기관인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으로부터 2012.1.30.에 기관평가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인증대학은 평가인증의 질 관리를 위하여 2년 후 사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평가 기준에 따라 아주자동차대학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LINC사업 재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산학협력중점교원 신규초빙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제고, 계약학과 등 정원 외 특별과정의 신설 운영에 따른 교직원 보수 재원 확보, 산학협력단 전입금 및 기부금 수익 증대를 통한 관리운영비 재원 마련, 연구·학생경비 현 수준 동결, 등록금 수입 대비 15% 장학금 유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재원 활용을 통한 교육용 기자재 및 교육시설 개선 등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첨부된 회의자료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상 협 :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전문대학 지표현황이 있는데, 같은 공학계열의 타 대학 지표현황도 첨부시켜 비교한다면 현재 아주자동차대학의 여건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주 인 옥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3 호 2015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승인(안)

이 사 장 : 2015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아주자동차대학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특성화전문대학 선정에 따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여건 확보, 대학 발전계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

지훈

이사

이영현

획 및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요소 충족을 위한 교원확보율 유지, 산학협력강화 및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우수인력 초빙을 목적으로 총 2명의 증·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평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1명, 교내 전임교원 총장 임명에 따른 대체충원 1명이며, 현재 전임교원 인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희 택 : 교원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모집계획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5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4 호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주행 실습장 안전펜스 공사, 생활관 노후 집기비품 교체 및 학생 체력단련시설 확충, 전화 교환기 및 연구센터 보일러 교체 등 노후시설 보완 및 노후장비 교체, 교원 보수 변동분 반영, 등록금·비등록금 회계간 예산배분 내역 조정을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642,456천원이 증가한 10,802,93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아주자동차대학총장이 추경 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홍 기 :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서는 전기이월자금 증가분이 6.4억원, 2014학년도 운영지출 감소분이 0.2억원으로 건물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생활관 노후 침대 및 의자교체 등 자산매입에 1.2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4억원은 2015학년도로 이월하는 예산편성입니다. 「사립학교법」 제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32조의3에 따르면 교비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어 2013학년도 결산시 이월자금을 차기학년도로 이월하기보다는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아주자동차대학 발전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지적해주신 대로 차기이월자금에 대해 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적립 가능한 한도 및 종류, 방법 등을 확인하여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윤성복 : 금년도 기관장 관용차 교체 예산을 집기비품매입비로 전환하신 점은 나름대로 총장께서 학교를 더 생각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합니다.

▣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관 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 감
수 입	등 록 금 수 입	5,904,761	5,904,761	0
	전입및기부수입	1,483,108	1,483,108	0
	교 육 부 대 수 입	729,400	729,400	0
	교 육 외 수 입	205,459	205,459	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2,480,208	1,837,752	642,456
	계	10,802,936	10,160,480	642,456
지 출	보 수	3,367,197	3,398,007	-30,810
	관 리 운 영 비	2,338,228	2,278,825	59,403
	연 구 학 생 경 비	2,288,788	2,332,361	-43,573
	교 육 외 비 용	60,000	60,000	0
	예 비 비	0	0	0
	고정자산매입지출	479,030	363,250	115,78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2,269,693	1,728,037	541,656
	계	10,802,936	10,160,480	642,456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 의결권

이사 이영현

제 5 호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은 현재 2임상과(외과, 외상외과)로 운영 중인 외과를 1부 9임상과로 분과하는 내용으로서, 외과를 위장관외과, 대장항문외과, 간이식및 간담도외과, 췌담도외과, 소아외과, 유방외과, 갑상선내분비외과, 이식혈관외과, 외상외과(기승인)로 나누어 전문분과로 세분화하고, 대내·외적으로 외과를 대표하며 임상과(외과분과) 공통의 업무를 조정·결정하는 기능을 위해 외과부를 두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임상과 승격에 따른 교원의 동기유발을 이끌어내고, 세부전문의를 집중육성하며, 임상진료 관련 업무추진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기하고, 협의진찰료의 수가인상 및 산정방식 확대에 따른 의료수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외과 운영현황 및 수도권 주요대학병원 외과 세부전문 분과 운영형태, 해당 조문에 대한 자세한 개정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탁승제 기획조정실장이 원(안)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주 인 육 : 외과 분과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 허가받을 사항도 아닐 뿐더러 대한외과학회에서도 세부 전문 분과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간이식및간담도외과·췌담도외과의 경우도 각자가 맡은 전문영역에서 각 분과를 발전시키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후 상황이 바뀌게 되면 분과된 영역을 다시 합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의료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4조(부속병원) ① 부속병원에는 원장과 제1	제14조(부속병원) ① 부속병원에는 원장과 제1

<간서명란>

이사장

탁승제

이사

이영환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진료부원장, 제2진료부원장, 행정부원장을 두며, 제1진료부원장 산하에는 지역암센터장, 내과부장, <삽입> 교육수련부장을 두고 제2진료부원장 산하에는 간호부장을 둔다.</p> <p>② 원장은 부속병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한 통제, 조정 등 병원전반에 관한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③ 제1진료부원장과 제2진료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제1진료부원장은 지역암센터, 내과부 각과 및 진료각과, 교육수련부를 관장하고 제2진료부원장은 진료지원부서 및 간호부를 관장한다.</p> <p>④ 행정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총무팀, 인사복지팀, 외래원무팀, 입원원무팀, 보험팀, 구매관리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 및 사업운영팀을 관장한다.</p> <p>⑤ 원장 직속으로 병원경영팀, 기관연구윤리심의실, 적정진료관리실, 건강증진센터, 권역외상센터, 현대아주의원을 두며, 병원경영팀에는 팀장을, 기관연구윤리심의실과 적정진료관리실에는 실장을, 건강증진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는 소장을, 현대아주의원에는 의원장을 둔다. 다만, 적정진료관리실에는 부서장을 보좌하는 부실장과 운영팀장을, 건강증진센터에는 소장을 보좌하는 부소장과 진료운영팀장 및 관리운영팀장을, 현대아주의원에는 의원장을 보좌하는 운영팀장을 둘 수 있다.</p>	<p>진료부원장, 제2진료부원장, 행정부원장을 두며, 제1진료부원장 산하에는 지역암센터장, 내과부장, 외과부장, 교육수련부장을 두고 제2진료부원장 산하에는 간호부장을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진료부원장과 제2진료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제1진료부원장은 지역암센터, 내과부 및 외과부 각과, 진료 각과, 교육수련부를 관장하고 제2진료부원장은 진료지원부서 및 간호부를 관장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5조(진료부서) ① 진료부서에는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신장내과, 중앙혈액내과, 감염내과, 알레르기내과, 류마티스내과의 내과부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외과, 외상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직</p>	<p>제15조(진료부서) ① 진료부서에는 내과부(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신장내과, 중앙혈액내과, 감염내과, 알레르기내과, 류마티스내과), 외과부(위장관외과, 대장항문외과, 간이식 및 간담도외과, 췌담도외과, 소아외과, 유방외과, 갑상선내분비외과, 이식혈관외과, 외상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p>

<간서명란>

이사장

최호석

이사

신재환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수술실, 집중치료실, 감염관리실, 지역암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협력센터, 국제진료센터, 고객상담실을 둔다.</p> <p>② <u>내과부</u> 각과, 진료 각과, 각실 및 각 센터에는 과장, 실장 또는 소장을 둘 수 있다. 다만, 국제진료센터에는 부소장을 둘 수 있다.</p> <p>③ 각 센터의 소장은 임상과장을 겸직할 수 있다.</p> <p>④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에는 과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사장을 둘 수 있다.</p>	<p>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수술실, 집중치료실, 감염관리실, 지역암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협력센터, 국제진료센터, 고객상담실을 둔다.</p> <p>② <u>내과부 및 외과부</u> 각과, 진료 각과, 각실 및 각 센터에는 과장, 실장 또는 소장을 둘 수 있다. 다만, 국제진료센터에는 부소장을 둘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1조의 2(자격 등) ① 기획조정실의 기획담당 부실장, 대외협력담당 부실장, 연구지원실의 부실장, 각 대학의 학과장, 부학과장, 주임교수, 과장 및 소장, 의과대학의 부학장 및 의학교육실장, 부속병원의 내과부장, <삽 입>, 교육수련부장, 과장(실장, 부실장, 소장, 부소장), 의원장은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의원장은 특별임용교원 또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된 비교원 의사(촉탁의사)를 보할 수 있다.</p> <p>② 간호부장은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③ 각 팀장, 기사장 및 운영팀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④ 각 부서에는 필요한 경우 부서장을 보좌하는 파트장을 둘 수 있으며, 파트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제21조의 2(자격 등) ① 기획조정실의 기획담당 부실장, 대외협력담당 부실장, 연구지원실의 부실장, 각 대학의 학과장, 부학과장, 주임교수, 과장 및 소장, 의과대학의 부학장 및 의학교육실장, 부속병원의 내과부장, <u>외과부장</u>, 교육수련부장, 과장(실장, 부실장, 소장, 부소장), 의원장은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의원장은 특별임용교원 또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된 비교원 의사(촉탁의사)를 보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간서명란>

이사장

최승익

이사

윤

지환

이사

이영현

제 6 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아주대학교 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 이월자금 예산편성 및 경영실적에 의거한 수입예산 조정, 건강보험기관부담금 관계법령(국민건강보험법 76조) 개정에 따른 예산 반영, 지역암센터 장비지원 기관 선정(2014.6월)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예산 반영, 환자급식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 조정, 장례식장 신축 관련 기본금증가 및 자산조정 반영이 되겠습니다. 부속병원의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3,923,000천원 증가한 454,659,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의 세부적인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홍 기 :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의료수익이 77억원 증가하고 의료비용이 43억원 증가하여 의료이익이 34억 증가하고 권역외상센터 국고보조금수익 80억원을 제외한 실제 당기순이익도 31억원 증가하는 예산(안)입니다. 의료비용은 영양팀 위탁전환 △8억원 등으로 인건비가 5억원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단체협상 후 예비비 50억원이 반영되면 실제 인건비가 인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료비는 의료수익 증가에 따른 증가와 환자급식 위탁전환으로 인한 감소 등에 따라 16억원 증가되었으며 관리비는 건강보험료 부담액 증가, 환자급식 위탁용역비 발생 등으로 32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실제 당기순이익이 3.5억원 수준으로 본예산 대비 31억원 증가하였으나 낮아서 선택진료비의 단계적 축소 및 상급병실 확대 등으로 인한 의료수익 감소 및 단체협상 후 예비비 50억원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므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의료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윤 성 복 : 관리비에 보면 환자급식 위탁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환자급식에 현행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위탁운영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는지, 수지차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료원장 유희석 : 건강보험상 급여부분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항목들이 꽤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식대입니다. 급식 원가를 식대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형병원들

< 간사명란 >

이사장

탁승제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은 현재 아웃소싱을 하고 있으며, 아주대병원도 이러한 위탁운영을 통해 수지상의 적자요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업체들은 여러 병원의 급식을 운영하는 대규모업체들로서 대량구매를 통한 재료비 단가 인하를 통해 수지를 맞추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위탁운영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영양팀 정규직 자연감소 및 활용 등이 반영되지 않아 예산상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추후 안정화되면 4억원 정도 손실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 윤 성 복 : 그 외 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합니다.

▣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관 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 감
수 입	의 료 수 입	397,000,000	389,300,000	7,700,000
	의 료 외 수 입	26,406,525	23,542,000	2,864,525
	기타고정부채수입	260,000	0	260,000
	차 입 금 수 입	6,997,900	5,400,000	1,597,900
	기 본 금 증 가	0	8,220,000	-8,220,000
	전 기 이 월 자 금	23,994,575	24,274,000	-279,425
	계	454,659,000	450,736,000	3,923,000
지 출	의 료 비 용	338,729,200	333,980,200	4,749,000
	의 료 외 비 용	12,087,800	10,871,700	1,216,100
	투자외기타자산지출	60,000	60,000	0
	기타고정부채상환	360,000	0	360,000
	차 입 금 상 환	15,561,000	12,900,000	2,661,000
	고 정 자 산	23,824,200	29,716,800	-5,892,600
	전 출 금	42,337,300	42,122,700	214,600
	예 비 비	5,000,000	5,000,000	0
	차 기 이 월 자 금	16,699,500	16,084,600	614,900
	계	454,659,000	450,736,000	3,923,000

< 간사명란 >

이사장

유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제 7 호 아주대학교의료원 병원동 증축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의료원 병원동 증축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본 안건은 병원동 증축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권역외상센터 헬리패드와 관련하여 설계 당시 헬리패드 전문업체 제안에 따라 설계된 엘리베이터 기종이 승강기안전관리법의 사용 승인을 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병원용 엘리베이터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 변경되는 엘리베이터의 항공법상 지장물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연결 브리지가 길어져 증가된 건축면적 25.11㎡(7.6평)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도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문길주 :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최 홍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의료원 병원동 증축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의료원 병원동 증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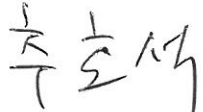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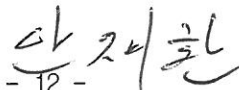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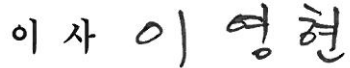
구 분	〈 권역외상센터의 헬리패드 병원용 엘리베이터 연결브리치 신설 〉
위 치	병원 15층 옥상
증가면적	▲ 25.11㎡ (7.6평)
소요예산	없 음 (제309차 이사회에서 승인된 15.1억원 내)
기 승인	전용면적 695.02㎡(210.32평) -제309차, 312차 법인이사회

제 8 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승진임용 동의(안)

이 사 장 :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신규·승진임용 동의(안) 발의.

교무처장 박영동 : 본교 임용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임용 대상자는 총 11명으로

< 간서명 란 >

이사장  이사  이사 

로 부교수 2명, 조교수 8명의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조교수 1명의 비정년트랙(교육중점) 전임 교원이 되겠습니다.

전임교원 승진임용 대상자는 총 19명으로 이 중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대상이 12명,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대상이 6명, 부교수로 특별승진 대상이 1명입니다. 특별승진과 관련하여 해당 교원인 산업공학과 이성주 조교수는 국제 학술지(SCI급) 논문업적이 산업공학과 peer 평가 SCI 기준 값(0.96편)을 1.7배 이상 상회(연평균 1.63편)하고, 승진기준 연 250점을 3배 이상 초과(본부기준 5배 이상 초과)하는 연구업적이 탁월한 분으로서 부교수로의 특별승진 제청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승진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및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은 별첨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박 상 일 : 대학에서 교수님들을 초빙할 때 어떤 기준을 두는지에 따라 채용에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산업공학과 이주연 부교수 신규임용 대상자의 경우 회사경력이 아주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학력을 살펴보면 ICT융합보다는 경영학 전공 쪽이 더 가까워 보이는데 학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특별채용 하시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무처장 박영동 : 본교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산학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학네트워크 부분에서 큰 강점을 갖고 계신 이주연 신규임용 대상자를 부교수로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포스코ICT 등에서의 다양한 기업경력이나 관련 저서 등을 미루어 볼 때 초빙분야에 무리가 없고 특히 LINC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 문 길 주 : 교수채용의 틀은 교육이나 연구실적 등 학자로서의 교수 될 자격을 보고 뽑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많은 이견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파격적으로 기업경력이 많은 사람을 교원으로 초빙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는 아주대를 위해 해볼 만한 도전이고 혁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사(총장) 안재환 : 말씀하신 대로 교수에 대한 패러다임을 달리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LINC사업 등 산학협력 부문에 중점을 둔 초빙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초 3년의 신규임용기간 동안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실적을 평가하여 본교 교수업적평가규칙에 따른 계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재임용이 되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올 수 있는 우려 또한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 장 :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 이주연 부교수 신규임용 대상자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더 잘 주지하고, 학교에 기여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이 외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열한 명의 신규임용 대상자 중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외국 박사가 3명 뿐이라 그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외국 박사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이를 채용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사(총장) 안재환 : 국내 박사라 하더라도 상당히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연구업적 측면에서도 실적이 월등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정성평가 기준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부분은 이러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 박상일 :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설아 조교수 신규임용 대상자의 경우, 초빙분야가 민사실무인데 로펌에서는 증권금융거래 및 기업자문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2순위 후보자인 김영주 변호사의 경우 개인법률사무소를 하면서 송무 쪽은 더 많은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셨겠지만, 초빙분야와 해당 임용대상자의 근무경력이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교무처장 박영동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관련 교수님들이 직접 면접을 진행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관심에 있어서 이설아 조교수 신규임용 대상자가 좀 더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민사소송법 수강이나 2012년부터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법무팀에서의 소송관리 및 소송 직접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등이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한 교원으로서의 능력이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사 신희택 : 하지만 박상일 이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빙분야가 민사실무라면 좀 더 이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 고려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분의 일반적인 자격이나 능력은 좋다고 판단되지만, 다만 앞으로 또 다른 분을 초빙한다면 법원의 실무경력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pool에서 조금 더 전공 적합성이 있는 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사 박상일 : 일반 기업에서 얼마간 송무업무를 담당하여 이를 보완하였다면 충분히 감당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무 강의에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초빙 전공분야나 업무경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을 것이고 두 후보자 중에서 선택한다면 무리가 없는 1순위자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 출신이라든지 좀 더 실무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신규임용 대상자로 있었다면 좀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사 장 : 법학전문대학원이나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신규임용 대상자가 마땅하지 않다면 이사회에서 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이설아 조교수 신규임용 대상자의 임용 동의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여 다시 결정하되 이를 총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사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고려하여 총장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께서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다시 협의 조율해서 원안대로 진행하시든 새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시든 임용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원(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신 희 택 : 본교 교원 신규임용 수정(안) 및 나머지 신규·승진임용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수정(안) 및 나머지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수정(안) 및 나머지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본교 전임교원 신규·승진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이철아 조교수 신규임용 대상자의 임용 동의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여 다시 결정하되 이를 총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신규임용 및 19명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이 사 장 : 다음으로 의료원 임용 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의료원 전임교원 신규·승진임용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임용 대상자는 총 3명으로 전임교원 교수 1명, 조교수 1명과 특별임용교원 대우교수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승진임용 대상자는 총 4명으로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2명,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2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승진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아주대학교의료원 임용 동의(안)에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주 인 옥 : 각 임용대상자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원 신규·승진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3명의 신규임용 및 4명의 승진임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최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 아주대학교 교원 임용 동의 내용

가. 신규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 교	산업공학과	이 주 연	부교수	2014.9.1 ~ 2017.8.31 (3년)
	약학과	박 상 규	부교수	2014.9.1 ~ 2017.8.31 (3년)
	신소재공학과	조 인 선	조교수	2014.9.1 ~ 2017.8.31 (3년)
	환경공학과	정 승 호	조교수	2014.9.1 ~ 2017.8.31 (3년)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윤 현 진	조교수	2014.9.1 ~ 2017.8.31 (3년)
	전자공학과	허 용 석	조교수	2014.9.1 ~ 2017.8.31 (3년)
	전자공학과	홍 영 대	조교수	2014.9.1 ~ 2017.8.31 (3년)
	수학과	박 보 람	조교수	2014.9.1 ~ 2017.8.31 (3년)
	법학전문대학원	이 설 아	조교수	2014.9.1 ~ 2017.8.31 (3년)
		※ 임용동의 여부를 재검토하여 다시 결정하되 이를 총장에게 위임		
	경영학과	박 청 규	조교수	2014.9.1 ~ 2017.8.31 (3년)
	경영학과	Kimin Kim	조교수	2014.9.1 ~ 2016.8.31 (2년)
의 료 원	외과학교실	한 세 환	교 수	2014.9.1 ~ 2024.8.31 (정년)
	간호학과	부 선 주	조교수	2014.9.1 ~ 2017.8.31 (3년)
	치과학교실	정 규 립	대우교수	2014.9.1 ~ 2016.8.31 (2년)

- 이상 본교 11명 / 의료원 3명 -

나. 승진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 교	산업공학과	정 명 철	교 수	2014. 9 ~ 정년
	교통시스템공학과	이 철 기	교 수	2014. 9 ~ 정년
	전자공학과	이 재 진	교 수	2014. 9 ~ 정년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강 경 란	교 수	2014. 9 ~ 정년
	미디어학과	신 현 준	교 수	2014. 9 ~ 정년
	수학과	조 수 진	교 수	2014. 9 ~ 정년
	생명과학과	박 상 규	교 수	2014. 9 ~ 정년
	경영학과	성 민 제	교 수	2014. 9 ~ 정년
교	e-비즈니스학과	강 주 영	교 수	2014. 9 ~ 정년
	행정학과	박 성 빈	교 수	2014. 9 ~ 정년
	분자과학기술학과	김 상 욱	교 수	2014. 9 ~ 정년
	법학전문대학원	강 현	교 수	2014. 9 ~ 정년
	전자공학과	김 영 진	부교수	2014.9.1 ~ 2020.8.31 (6년)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한재환

이사

이영현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경영학과	김 승 환	부교수	2014.9.1 ~ 2020.8.31 (6년)
	국어국문학과	곽 명 숙	부교수	2014.9.1 ~ 2020.8.31 (6년)
	국어국문학과	조 하 연	부교수	2014.9.1 ~ 2020.8.31 (6년)
	사학과	이 상 국	부교수	2014.9.1 ~ 2020.8.31 (6년)
	경제학과	김 정 호	부교수	2014.9.1 ~ 2020.8.31 (6년)
	산업공학과	이 성 주	부교수	2014.9.1 ~ 2020.8.31 (6년)
의 료 원	미생물학교실	김 경 민	교 수	2014.9.1 ~ 2028.2.28 (정년)
	가정의학과교실	김 광 민	교 수	2014.9.1 ~ 2028.8.31 (정년)
	외과학교실	김 지 훈	부교수	2014.9.1 ~ 2020.8.31 (6년)
	간호학과	송 주 은	부교수	2014.9.1 ~ 2020.8.31 (6년)

- 이상 본교 19명 / 의료원 4명 -

제 9 호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이 사 장 :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발의.

교무처장 박영동 : 아주대학교 본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교는 적정 교원확보를 유지, 우수 교원 채용을 위한 유연한 초빙제도 도입 등의 기본 방향에 따라 총 32명을 증·충원할 예정입니다. 2015학년도에는 배정 기준별로 2014학년도 미충원 21명, 정년퇴직·사직 등에 의한 결원 4명, 대학평가대비 및 약대 교육부 이행점검 대비, 산학협력중점교수 정책배정 등 7명으로 전체 전임교원 32명 신규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회의자료 2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상 협 : 정년트랙 전임교원 충원 계획 중 중도퇴직 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대학에서는 실력 있고 유능한 교원을 신규임용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때로는 그 분들이 징검다리 식으로 조금 있다가 다른 대학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이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총장) 안재환 : 해당 인원 8명 중 3명은 다른 사유로 인한 사직 내지는 재임용 탈락이고, 그 나머지 5명이 지적해주신 대로 다른 대학으로 이직에 따른 중도퇴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교에서는 실력 있는 교원의 중도퇴직을 방지하고자 특별승진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활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익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남발하게 되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최 홍 : 적정 교원확보를 유지를 위한 초빙계획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신상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 장 : 다음으로 의료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아주대학교 의료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은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전임·특임교원은 신규증원 및 결원 보충은 억제하고자 하고, 연구·임상강사도 각 교실 요청사유를 심사 분석하여 현원 수준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승인받은 교원 채용계획 정원 459명 대비 전임교원은 1명, 특임교원은 1명을 축소하여 총 정원을 457명으로 하며, 이에 따라 2014년 6월 현원 406명을 기준하여 총 51명 총원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배정 기준별로 2014학년도 미충원 48명, 정년·사직 등에 의한 결원 대체 3명입니다.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신희택 : 2014학년도 대비 전체 정원은 오히려 약간 명 줄이고, 내년에는 총원만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주인욱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 장 : 그러면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10 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 장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 대학 내 LINC사업 수행을 위해 총장직속기구로 「아주대학교산학협력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

이호환

이사

이영현

선도대학육성사업단」을 설치하고, 산학협력친화형 교육과정 및 산학협력 중점교수 관리, 취업 및 창업교육 등 다양한 LINC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를 지원할 행정 전담 관리조직으로 산학협력단 내 「LINC사업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LINC사업 조직체계도, 타 대학 사례, 신·구 조문대비표 등은 첨부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박 상 일 : 직제규정 개정(안)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윤 성 복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 (기구) ① 내지 ⑦ (생략) ⑧ 총장직속기구로 대학발전본부, 홍보실 및 비서실 <삽 입>을 둔다. ⑨ (생략)	제5조 (기구) ① 내지 ⑦ (현행과 같음) ⑧ 총장직속기구로 대학발전본부, 홍보실, 비서실 및 <u>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u> 을 둔다. ⑨ (현행과 같음)
제11조의 2(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①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②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는 산학기획팀, 산학지원팀 및 산학재무팀<삽 입>을 둔다. ③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의 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 설>	제11조의 2(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는 산학기획팀, 산학지원팀, 산학재무팀 및 <u>LINC사업팀</u> 을 둔다. ③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의 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u>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u>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④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특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운영기구를 둘 수 있다.</p> <p>⑤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p>	<p><u>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p> <p>④ 내지 ⑤ (현행과 같음)</p>
<p>제12조(총장직속기구) ① 대학발전본부는 대학발전 기금의 조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p> <p>② 홍보실은 대내외 홍보를 담당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홍보팀을 둔다.</p> <p>③ 비서실은 총장 및 교무부총장의 의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p> <p><u><신 설></u></p> <p>④ 대학발전본부에는 본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⑤ 홍보실 및 비서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u><신 설></u></p> <p>⑥ 홍보팀에는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제12조(총장직속기구) ① 내지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은 정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의한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한다.</u></p> <p>⑤ 대학발전본부에는 본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⑥ 홍보실 및 비서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⑦ <u>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며, 세부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u></p> <p>⑧ 홍보팀에는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제 11 호 아주대학교 특별임용교원인사규정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특별임용교원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본 안건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및 교육부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정기준」에 의거, 특별임용교원 중 산학협력교수를 학과·대학(원) 뿐만 아니라 부서에 소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임교원 산학협력 교수 신규임용시 추천 범위를 학과 및 대학원에서 산학협력단 등 소속 부서까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2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문 길 주 : 비전임교원으로서의 산학협력교수 소속 범위와 해당 교원의 추천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특별임용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특별임용교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6조(임용) ① 산학협력교수는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② 산학협력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 임용할 수 있다.	제36조(임용) ① 산학협력교수는 <u>학과(전공), 대학(원) 및 부서에 소속된 교원으로</u>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 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으로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간사명 란 >

이사장

추 호석

이사

산재환

이사

이영현

제 12 호 원천정보관(카페테리아) 신축 관련 변경 승인(안)

이 사 장 : 원천정보관(카페테리아) 신축 관련 변경 승인(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지난 제310차 이사회에서 의결해주신 카페테리아 신축에 관한 내용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내용을 재승인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한 결과, 소규모 건물에 대한 평당 단가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였고 지나치게 낮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면적 및 예산 규모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연면적은 87.35㎡ 축소, 총사업비는 4억1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원조달, 사업비 증가사유, 설계변경 내용 등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윤 성 복 : 증가되는 사업비 재원조달 내용 중 해동장학 지원금이 있는데, 시공업체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시공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당연히 해동장학재단과는 무관한 업체로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 사 윤 성 복 : 이 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원천정보관(가칭 카페테리아) 신축 관련 변경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원천정보관(카페테리아) 신축 관련 변경 내용

> 신축 개요(변동 사항)

구 분	제310차 이사회 의결	변경 내용	증 감
건축면적	373.7㎡ (113.0평)	363.75㎡ (110.03평)	▽ 9.95㎡ (▽ 3.01평)
연면적	991.4㎡ (300.4평)	904.05㎡ (273.95평)	▽ 87.35㎡ (▽ 26.45평)

< 간사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지환

이사

이영현

➤ 총 사업비

구 분	제310차 이사회 의결	변경 내용	증 감
건축비	1,100,000,000원	1,506,000,000원	▲ 406,000,000원
설계, 감리비, 행정처리 비용 등	100,000,000원	95,000,000원	▽ 5,000,000원
계	1,200,000,000원	1,601,000,000원	▲ 401,000,000원

cf) 재원조달 : 해동장학 지원금 3억원 + 교비회계 1억1백만원 ⇨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

제 13 호 아주대학교 내 본교-장례식장 연결도로 개설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내 본교-장례식장 연결도로 개설 승인(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본 안건은 신축 중인 장례식장과 연계한 교내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내용으로 장례식장 이용차량 및 광고방향 통행수요 증가에 따른 교직원 및 학생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길이 99m, 폭 10m의 차도 및 인도이며, 총예산 공사비는 약 3억원으로 공사 일정 및 예산편성 등은 신축되는 장례식장 준공시점에 맞추어 병원과 협의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위치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최 홍 : 설명하신 내용 이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희 택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내 본교-장례식장 연결도로 개설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14 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훈

이사

이영현

기획처장 김민구 :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등록금수입, 국고수입, 전입금, 기부금수입 등 운영수입예산 증가에 따른 지출예산, 기금인출에 따른 예산, 2013학년도 결산 이월분에 대한 지출 예산을 반영한 편성으로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15,149백만원이 증가한 252,40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민구 기획처장이 추경 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홍 기 :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평생교육원 등 학과 및 과정 신설에 따른 등록금수입 및 지출 증가, 수도권 특성화사업 등 국고수입 및 해동장학기금 등 기부금 수입 증가에 따른 지출 반영, 학교 셔틀버스 구입을 위한 기금 인출 등 총 예산규모가 본예산 대비 15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운영수지가 1.1억원 감소, 52.6억원을 순적립하는 예산(안)입니다. 본교 교비회계 제1차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 사 문 휘 창 : 투자와 기타자산 지출에서 임의기금적립이 2014학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16.8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록 등록금수입 대비 장학금지급 비율도 다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긴 하지만, 타 대학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기금적립과 적절한 장학금 지급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등록금회계에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기금으로만 적립할 수 있는데 아주대학교의 경우 오히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하시는 대로 일부 타 사립대학처럼 기금만 적립하고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김 선 용 :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경예산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주 인 옥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안 지 환

이사

이 영 현

☐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 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 감
수 입	등록금수입	129,093	127,789	1,304
	전입및기부금수입	82,067	75,218	6,849
	교육부대수입	12,705	12,315	390
	교육외수입	3,153	3,090	63
	투자외기타자산수입	4,777	2,951	1,826
	고정부채입금	5,100	5,100	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5,513	10,796	4,717
	계	252,408	237,259	15,149
지 출	보 수	112,912	110,926	1,986
	관 리 운 영 비	25,283	23,394	1,889
	연구 학생 경비	77,108	72,326	4,782
	교육 외 비 용	1,561	1,498	63
	자 산 취 득	18,488	14,639	3,849
	투자외기타자산지출	9,885	8,021	1,864
	고 정부 채 지 출	1,675	1,675	0
	예 비 비	553	593	-4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4,943	4,187	756
	계	252,408	237,259	15,149

제 15 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안) 받의.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 중 2014.8.22부로 임기만료 예정인 경영대학원장, 2014.8.31부로 임기만료 예정인 경영대학장, 의과대학장, 간호대학장, 교육대학원장, 의학전문대학원장, 임상치의학대학원장, 병원장, 기획조정실장, 연구조정실장, 제1진료부원장, 제2진료부원장의 후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경영대학장에 경영학과 한봉희 교수,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에 약리학교실 주일로 교수, 간호대학장에 간호학과 유문숙 교수, 경영대학원장에 경영학과 박호환 교수, 교육대학원장에 생명과학과 남석현 교수, 임상치의학대학원장에 치과학교실 정규림 대우교수, 병원장에 순환기내과학교실 탁승제 교수, 기획조정실장에 외과학교실 한상욱 교수, 연구지원실장에 알레르기내과학교실 박해심 교수, 제1진료부원장에 소아청소년과학교실 박문성 교수, 제2진료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지환

이사

이영현

부원장에 영상의학교실 김재근 교수를 임명하고자 동의 요청 드립니다.
 (참석임원 첨부된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윤 성 복 : 대부분의 보직임명일자가 2014.9.1부이고 경영대학원장의 임명요청일자만 2014.8.23부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보직임기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사(총장) 안재환 : 보직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만료 일자에 맞추어서 해당 날짜로 제청된 것입니다. 하지만, 직제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기가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 그 학기말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발령을 통해 경영대학원장의 보직임기를 연장하고, 2014.9.1부 임명에 대해 이사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 장 : 그러면 경영대학원장의 경우는 경영학과 박호환 교수를 2014.9.1부로 임기 2년의 보직교원으로 임명동의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 외 나머지 보직교원 임용 동의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사 최 홍 : 이력사항을 살펴보니 본교와 의료원에 큰 힘이 되실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수정(안) 및 나머지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수정(안) 및 나머지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경영대학원장에 경영학과 박호환 교수를 2014.9.1부로 임기 2년의 보직교원으로 임명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그 외 나머지 보직에 대해서도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2014.9.1부 임기 2년의 보직교원으로 임명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 내용

보 직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임명일자
경영대학장	경영학과	교 수	한 봉 희	2014.9.1 (2년)
의과대학장	의학과(약리학교실)	교 수	주 일 로	2014.9.1 (2년)
간호대학장	간호학과	교 수	유 문 숙	2014.9.1 (2년)
경영대학원장	경영학과	교 수	박 호 환	2014.9.1 (2년)
교육대학원장	생명과학과	교 수	남 석 현	2014.9.1 (2년)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안 재 환

이사

이 영 현

보 직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임명일자
의학전문대학원장	의학과(약리학교실)	교 수	주 일 로	2014.9.1 (2년)
임상치의학대학원장	의학과(치과학교실)	대우교수	정 규 립	2014.9.1 (2년)
병원장	의학과(순환기내과학교실)	교 수	탁 승 제	2014.9.1 (2년)
기획조정실장	의학과(외과학교실)	교 수	한 상 욱	2014.9.1 (2년)
연구지원실장	의학과(알레르기내과학교실)	교 수	박 해 심	2014.9.1 (2년)
제1진료부원장	의학과(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 수	박 문 성	2014.9.1 (2년)
제2진료부원장	의학과(영상의학교실)	교 수	김 재 근	2014.9.1 (2년)

제 16 호 2014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이 사 장 : 2014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2,212백만원 증가한 27,30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장례식장 신축에 따른 기타기금처분액 반영 및 신축공사비 지출, 장례식장 부지 교비회계 보전에 따른 경상비 전출, 수익사업장(군산빌딩) 임대보증금 환급, 2013학년도 결산 차기이월자금 수입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이영현 상임이사가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홍 기 :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주로 장례식장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지출의 증감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4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 2014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 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 감
수 입	전 입 금 수 입	4,867	4,867	0
	기 부 금 수 입	20	20	0
	예 금 이 자 수 입	2,130	2,130	0
	수 익 재 산 수 입	1,836	1,836	0
	잡 수 입	1	1	0
	기 금 인 출 수 입	11,280	0	11,280
	고 정 부 채 입 금	375	325	50
	전 기 이 월 자 금	6,797	5,915	882
	계	27,306	15,094	12,212
지 출	보 수	697	670	27
	관 리 운 영 비	1,039	910	129
	지 급 이 자	33	33	0
	법 정 부 담 전 출	5,815	5,815	0
	경 상 비 전 출	1,810	998	812
	예 비 비 등	201	201	0
	기 금 적 립	68	55	13
	투 자 자 산 지 출	50	0	50
	고 정 자 산 매 입 비	7,148	1,195	5,953
	고 정 부 채 상 환	815	315	500
	차 기 이 월 자 금	9,630	4,902	4,728
	계	27,306	15,094	12,212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 장 : 제314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윤 성 복 : 이사장님과 안재환 이사님 그리고 이영현 이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석임원 11인 전원이 윤성복 이사의 의견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을 참석임원의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 사 안 재 환

이 사 이 영 현

10. 폐회선언

이 사 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전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14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2014 년 8 월 14 일

이사장	추 호 석	추호석
이사	윤 성 복	윤성복
이사	안 재 환	안재환
이사	문 길 주	문길주
이사	신 희 택	신희택
이사	주 인 옥	주인옥
이사	박 상 일	박상일
이사	신 상 협	신상협
이사	이 영 현	이영현
이사	최 홍	최홍
이사	김 선 용	김선용
감사	문 휘 창	문휘창
감사	배 홍 기	배홍기